

검 토 보 고 서

안 건 명	부서명	페이지
1.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	총무과	1
2.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		3

(2013. 9. 2)

마포구의회 행정건설위원회

[전문위원 명 금 길]

1. 안 건 명

가.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2. 제출일자 및 제출자

가. 제출일자 : 2013년 8월 22일

나. 제 출 자 : 마포구청장

3. 의안 회부일자

가. 2013년 8월 27일

나. 의안번호 : 13-69

4. 관련근거

가. 「지방자치법」 제112조 (행정기구와 공무원)

나.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기준」 제13조 (시·군·구의
기구설치기준)

[검토보고]

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동 일부개정 조례안은 안전한 사회 구현을 위해 국가 안전총괄·조정기관으로 안전행정부를 설치하고 국가안전관리에 대한 체계를 전면 개편함에 따라 우리구 행정기구 및 분장사무 일부를 개정하고자 제출된 것임.

< 주요내용 >

- (1)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총괄 기능 강화를 위해 국 명칭을 “행정관리국”에서 “안전행정국”으로 변경함.
- (2) 안 제4조에서는 안전행정국장의 분장사무 중 “안전도시 및 생활안전증진 등에 관한 사항”을 “안전정책 총괄·조정 및 안전문화운동 등에 관한 사항”으로 개정하여 강화된 안전 총괄 업무를 분장사무에 명시함.

[검토의견]

동 일부개정 조례안은 정부의 국가안전 관리체계 전면 개편 추진에 의거 ‘안전한 사회’ 구현을 위해 지자체에 안전조직 개편지침을 시달함에 따라 우리구도 안전전담기구 명칭을 “행정관리국”에서 “안전행정국”으로 변경하고 강화된 안전 총괄 업무를 분장사무에 명시를 한 사항으로, 우리 구 조례규칙심의회와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법제 사무처리규칙」 제6조 규정에 의한 입법예고 절차를 거쳐 별다른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.